

재영한인교육기금 이사회 운영 실무 규정(개정안, 2022.9.23. 시행)

제 1 조 규정의 목적

본 실무 규정은 정관의 규정을 실무에 알맞게 요약하고, 더불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이사회 운영 실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재영한인교육기금(이하 교육기금)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

제 2 조 이사회

교육기금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, 본 실무 규정에 다른 규정 사항이 없으면 교육기금의 사무 집행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인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조 이사회의 기능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3.1.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/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3.2. 한인종합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3. 정관(실무 규정 포함)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3.4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3.5. 기타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
- 3.6. 기타 법령이나 정관(실무 규정 포함)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(예. Charity Commission, Companies House, HMRC 정기 보고 등)
- 3.7.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(예. 당사자의 임면 결의시, 법인과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시)

제 4 조 이사회의 소집

- 4.1. 예·결산 심의, 감사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기이사회(연 2 회)
- 4.2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4.3. 재적이사 1/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제 5 조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

- 5.1. 이사회의 구성은 당연직 이사와 일반 이사로 한다.
- 5.2. 당연직 이사와 일반 이사는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5.3. 본 실무 규정에 별도 규정 사항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인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한인종합회관의 매각 및 지위변경 등 중대한 사항, 정관 (실무 규정 포함) 개정, 재단의 해산의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의 전원 동의를 포함한 재적 이사의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5.4. 교육기금의 취지에 동의하는 후원자로 명예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명예 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5.5. 이사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이사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6 조 이사의 조건

- 6.1. 이사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교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기금의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
- 6.2. 이사는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, 교육기금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공익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 7 조 이사의 정수

- 7.1. 당연직 이사는 재영한인총연합회장, 런던한국학교장, 재영한국경제인협회장, 주영국대한민국 대사관 교육원장이다.
- 7.2. 일반 이사의 정수는 10 명으로 한다.
- 7.3. 7.2.에서 정한 일반 이사 외에 금융, 회계 등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이사 2 명을 별도로 두며, 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7.4. 명예 이사는 정수를 따로 정하지 않으며, 이사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 8 조 이사의 임기

- 8.1.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절차에 따른 해당 직무 수행 기간으로 한다.
- 8.2. 일반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, 1 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.
- 8.3. 일반 이사는 교육기금이 주관하는 행사(비대면 포함)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사유 없이 이사회 및 교육기금 주관 행사에 연속하여 6 개월 이상 불참시 자격이 상실된다.
- 8.4. 명예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, 1 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.

제 9 조 이사의 선임

- 9.1.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 단, 당연직 이사로 규정된 자는 해당 기관의 인사발령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9.2.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 일반 이사와 명예 이사를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- 9.3. 일반 이사는 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가 각각 2 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, 재적 이사의 2/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.
- 9.4. 명예 이사는 재적이사 2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재적 이사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.
- 9.5. 일반 이사와 명예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 아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9.5.1. 추천서 1 부
 - 9.5.2. 이력서 1 부

제 10 조 이사장, 감사 및 해임

- 10.1. 이사장은 일반 이사 또는 덕망 있는 인사 중 이사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재적 이사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10.2. 10.1.에 따라 이사장을 결정할때에는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.
- 10.3.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재적 이사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을 선임하며, 직무 대행 기간은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로 한다.
- 10.4.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, 1회에 한해 재적 이사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재임할 수 있다.
- 10.5.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주재하며, 이사회가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.
- 10.6. 감사는 일반 이사 중 1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외부 감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0.7. 이사회는 교육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(예. 기금 조성, 사업 관리, 행사, 대외 관계, 한인종합회관 운영, 홍보 담당 등)
- 10.8.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일반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, 해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.
 - 10.8.1.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
 - 10.8.2.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
 - 10.8.3. 한인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교육기금의 명예를 훼손할 때
 - 10.8.4. 제 11 조의 사항을 위반할 때
 - 10.8.5. 그 밖에 당연직 이사 전원이 이사회에 해임을 요청할 때
- 10.8.6. 당연직 이사의 경우, 10.8.1.부터 10.8.5.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무를 해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정지한다.

제 11 조 자료의 열람

- 11.1. 당연직 이사 및 일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열람을 서면(전자우편 포함)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11.2. 11.1.에 따라 제출받거나 열람한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.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 및 일반 이사가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,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기부금 모금 및 운영

- 12.1. 본 교육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.
- 12.2. 모금된 기부금은 재단의 운영 재정 항목과 별도로 관리하며, 재영 동포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목적에 특정되어 사용한다.
- 12.3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기부자 또는 기부 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, 재단 홈페이지에 연 2회 이상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.

제 13 조 재단 해산

- 13.1. 재단의 해산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13.2. 재단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국가기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 14 조 부칙

- 14.1. (관례) 본 실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(실무 규정 포함)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- 14.2. (개정) 본 실무 규정의 개정은 제 5 조 제 5.3.에 따른다.
- 14.3. (제 9 조 제 9.3.의 적용) 제 9.3.의 일반 이사는 제 3 차 개정(2022.9. 23.개정) 후 최초 1 회에 한해 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가 각각 2 명씩 선임한다.
- 14.4. (효력) 본 실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

14.5. (제정일) 본 실무 규정의 제정일은 2013년 4월 25일이다.

14.6. (1차 개정일) 본 실무 규정의 개정일은 2018년 5월 10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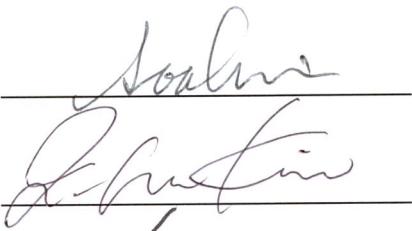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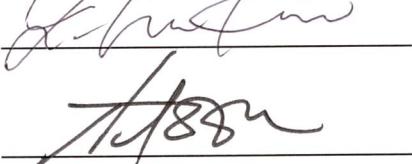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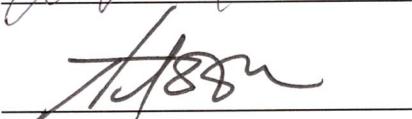
14.7. (2차 개정일) 본 실무 규정의 개정일은 2020년 2월 13일이다.

14.8. (3차 개정일) 본 실무 규정의 개정일은 2022년 9월 23일이다.

위와 같이 당연직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재영한인교육기금 이사회 운영 실무 규정을 개정한다.

2022. 9. 23.

재영한인교육기금 당연직 이사회

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	김 숙희	
런던한국학교 교장	김지혜	
재영한국경제인협회 회장	박명은	
주영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	이승신	
주영대한민국대사관 교육원장	안희성	
재영한인교육기금 이사장	김민정	